

獨占規制法에서의 民事的 制裁(1)

丁相朝

문헌: 司法行政

권호: 369호

출처: 한국사법행정학회

[76]

I. 民事的 制裁의 方法

II. 民事的 制裁의 制限

III. 公正去來委員會의 介入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有效適切한 運用은 效率的인 自由經濟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그동안 통제되어 왔던 경제를 보다 효율적인 市場의 自由競爭秩序에 맡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유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바, 獨占規制法이 바로 그를 위한 법적장치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주1)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점규제법의 유효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獨占規制法의 違反行爲에 대한 法的制裁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統制보다는 효율적인 자유경쟁질서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독점규제법의 운용에 관한 상당한 경험도 축적되고 同法의 役割과 機能이 增加함에 따라서 동법을 실현하기 위한 "法的制裁 制度에의 自由로운 接近" 또는 "民事的 制裁의 活性化"가 독점규제법에 관한 오늘날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本稿는 現行 獨占規制法下에서의 법적제재 특히 民事的 制裁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독점규제법에서의 법적제재의 방법으로서는 行政的 制裁, 刑事的 制裁, 民事的 制裁의 세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독점규제법은 競爭制限行爲의 시정 및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절차를 公正去來委員會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行政的 制裁에만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刑事的 制裁와 民事的 制裁가 獨占規制法의 法目的實現에 기여하는 정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公正去來委員會의 制限된 人的 및 物的 資源을 고려할 때, 私인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와 나아가서는 留止請求를 포함한 民事的 制裁제도의 활성화는 독점규제법의 法目的實現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독점규제법의 實體法規定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나, 불행히도 節次法規定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심이

배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우리나라 獨占規制法下에서의 不當한 共同行爲 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주2)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나, 그로 인해서 損害를 입은 者가 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措置의 確定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法院에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등의 절차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本稿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民事的 制裁의 活性化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美國·英國·獨逸·유럽共同體 등에서의 民事的 制裁의 法制度와 그 運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 民事的 制裁의 方法

현행 獨占規制法은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 대해서 無過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은 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措置가 確定된 후에만 裁判上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주3)

이와 같이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부여된 實體法上的 損害賠償請求權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확정이라는 節次法上的 要件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러한 절차법상의 요건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民事的 制裁는 行政的 制裁에 종속되어 있고 민사적제재의 活用度는 크게 제약된다. 是正措置 前置主義에 구속되지 않는 대안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고 간이한 민사적제재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美國·英國·獨逸에서의 民事的 制裁에 관해서 살펴본다.

1. 美 國

美國 독점규제법하에서 법위반행위로 인해서 資産 또는 事業上의 損害를 입은 자는 당해 손해의 3배의 금액을 청구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고,주4)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을 위험에 직면한 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留止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주5)

미국에서의 이러한 私的 訴訟(Private antitrust actions)의 利用度는 아주 높아서, 미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및 법목적실현에 있어서는 私的 訴訟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로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私的 訴訟의 관행이 중단되기도 했고, 1970년대말부터는 법원이 原告適格의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사적소송의 活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지만,주6)

私的 訴訟의 件數가 여전히 法務部나 公正去來委員會에 의해서 취급되는 건수보다 많다.주7) 특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에 관한 서면법 제2조의 위반을 다루는 소송의 경우에, 금세기 초에는 법무부에서 제기한 소송들도 있었지만, 60년대부터는 그에 관한 모든 소송이 私的 訴訟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주8)

특정 사업자가 독점규제법의 존재를 알면서도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은 당해 경쟁제한행위가 摘發될 가능성,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提起될 가능성, 訴訟費用과 敗訴의 可能性등에 의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경쟁제한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법원에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적제재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경쟁제한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고, 또한 미국에서와 같이 경쟁제한행위자에 대해서 3배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대다수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實損害賠償만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損害賠償請求의 소가 제기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訴訟費用은 소송 일반의 문제이지만, 勝訴 및 敗訴의 確率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독점규제법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 提訴率 및 摘發率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특히 3倍 賠償제도가 독점규제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가 많다. 3倍 賠償제도는 競爭制限行爲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자에게 강력한 金錢的 誘引이 되어서,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할 가능성을 높이고, 현실적으로 적발되지 아니한 경쟁제한행위로 인한 經濟的 非效率性과 費用을 相殺하고 補償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특정경쟁제한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자들 가운데 일부의 被害者만이 訴를 제기하여 實損害만을 배상 받는 경우가 많다면, 경쟁제한행위자에 대한 抑止的 效果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3倍賠償을 인정하게 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억지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상액을 높이는 경우에도 왜 2배가 아니라 3배인가 또는 3배가 아니라 4배로 높이면 더 좋은가 하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3배 배상의 金錢的 誘引力으로 인한 濫訴의 弊端이 지적되기도 한다.주9) 어느 程度의 賠償이 가장 效率的인 結果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상 정도와 原·被告가 될 자의 행위와의 相互 關係를 살펴보아야 한다. 賠償額이 많아짐에 따라서, 경쟁제한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들 가운데 訴를 提起하려고 하는 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경쟁제한행위가 摘發될 確率도 높아질 것이다. 다만 경쟁제한행위에 따라서 적발되기 어려운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어서, 예컨대, 再販賣價格維持行爲와 같은 水平的 競爭制限行爲는 수직경쟁제한행위의 경우보다 더 노출되어 있어서 적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따라서 3倍 賠償과 같은 과도한 금전적 유인이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주 10)

그리고, 租稅率과 租稅收入總額과의 관계처럼 어느 정도의 배상액까지는 訴訟 件數가 증가하겠지만 그 이상의 배상액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訴訟 件數가 감소하는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상액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또한 배상액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원고가 될 자(즉, 경쟁제한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者)가 경쟁제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經濟的 效果에 관한 專門家 分析을 구하는데 충분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勝訴率도 높아지고, 法院으로서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어서 誤判으로 인한 독점규제의 非效率性을 낮출 수 있다.주 11)

摘發可能性 및 訴訟率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제한행위가 明白해서 배상액을 높이지 아니해도 立證 및 經濟的 效果分析이 영향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3倍 賠償制度에 대한 개선안으로써, 적발가능성, 소송율, 입증과 분석의 어려움 등의 기준을 가지고,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2배, 3배, 4배 등으로 배상액을 달리 정해야 한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그 효과를 고려하여 裁量을 가지고 賠償倍數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있다.주12)

2. 英 國

영국에서의 競爭法 執行에 관한 제1차적인 책임은 통상성장관, 실질적으로는 그 산하의 公正去來廳長에게 있다. 통상성장관 또는 공정거래청장은 경쟁

[79]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獨占 및 合併委員會(The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주13)

또는 消費者保護委員會(The Consumer Protection Advisory Committee)주14)

에 당해행위를 의뢰하여 조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이 두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통상성장관에게 보고하지만 통상성장관이 그 위원회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의 경쟁제한행위는 公正去來廳에 登錄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자의 그러한 登錄義務는 그러한 경쟁제한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되는 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이다.주15)

따라서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登錄義務 履行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당해 경쟁제한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자가, 통상성장관 또는 공정거래청장의 處分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영국의 경쟁법은 私인에 의한 민사적제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이와 같은 成文法上的 민사적제재는 활용되고 있지 않고, 보다 시의적절하고 융통성이 많은 普通法上的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에 의한 민사적제재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주16)

이는 一般 不法行爲를 원인으로 한 損害賠償請求와 마찬가지로, 美國의 私的訴訟에서의 懲罰的 賠償은 아니다. 이러한 보통법상의 민사적제재는 통상성장관 또는 공정거래청장의 처분 등에 의한 行政的 制裁를 補完함으로써 英國 競爭法上 抑止의 효과를 높여주고 法目的 實現을 충실하게 해주며 중국적으로 競爭法 法理를 발전시켜 주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주17)

이러한 민사적제재는 유럽공동體 競爭法이 準據法이 되는 경쟁제한행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영국의 경쟁법이 간접적으로 유럽공동체의 다른 會員國의 競爭法 法理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

3.獨 逸

독일의 競爭制限防止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도 "본법의 규정 또는 본법에 기하여 카르텔관청 또는 상소관할법원이 내린 처분에 위반한 자는 당해 규정 또는 처분이 他人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保護客體에 대해서 위반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18)

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카르텔관청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私인이 곧바로 법원에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서, 법위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損害賠償請求이외에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留止請求의 訴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私인이 경쟁제한행위의 방지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實務를 보면 不正競爭防止法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의 訴는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쟁제한방지법 위반을 請求原因으로 한 損害賠償請求의 訴의 利用度는 美國이나 英國의 私的訴訟에 비하면 아주 저조한 형편이다.주19)

이는 독일에서 경쟁제한방지법이 경쟁질서유지에 의한 私의利益의 보호보다는 경쟁질서 그 자체에 관한 公

[80]

의利益(Public interest)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 法制度的 原因의 하나로는 獨逸의 경쟁제한방지법이 美國과 英國의 私的訴訟의 長點을 많이 도입하면서도 독일의 社會, 經濟的 特殊性을 반영해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他

인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法規定 違反의 경우에 한해서만 私的訴訟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제한된 한도내에서나마 私的訴訟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규정에 관해서 위반의 摘發可能性이 증가하고 抑止的效果가 높혀지며 總국적으로 法目的實現이 더욱 충실화된다.

4.民事的 制裁의 活性化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행정적제재와는 별도로 獨立된 民事的 制裁를 허용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의 운영에 있어서 그 위반의 適發可能性과 抑止的效果를 높히고 總국적으로 法目的實現이 더욱 충실화된다. 더우기, 독립된 민사적제재가 허용되지 않고 정부기관이 독점규제법 運用을 獨占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부기관이 偏見을 가지고 일정종류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를 게을리함으로써 有效적절한 法執行이 방해받을 수 있다. 특히, 당해정부기관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한, 업계의 특정관행에 대한 經濟學的 分析 및 검토 그리고 그에 대한 법 해석 및 적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經濟的變化에 대응한 有效적절한 법집행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주20)

이와 반대로 行政的 制裁와 병행해서 독립된 民事的 制裁도 허용되면, 독점규제법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多邊化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적용이 검토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措置의 確定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또는 그와 병행해서 民事的 制裁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現行 法體系下에서 가능한 방법으로서 특정 경쟁제한행위가 民法上의 不法行爲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損害賠償請求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에서 인정된 損害賠償請求權의 法的性質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는데, 그 법적성질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혹자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들은 獨占規制法의 制定에 의해서 비로서 禁止되고 違法인 것으로 되었다고 보아서 民法上의 不法行爲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法目的 達成을 위해서 特殊한 不法行爲로 규정된 것이고 따라서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한 독점규제법규정은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特則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주 21)

이 견해에 의하면 독점규제법위반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獨占規制法의 實體法 및 節次法 規定들만이 적용된다고 보게되고 따라서 獨占規制法下의 민사적제재에 있어서 是正措置 前置主義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상의 損害賠償請求權이 동법의 법목적달성 또는 위반행위 抑止的效果의 향상을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서, 동법위반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개인적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民法上의 不法行爲의 要件을 입증하여 損害賠償請求를 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損害賠償請求도 허용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의 억지적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이고, 또한 不法行爲法上의 故意 또는 過失과 因果關係의 立證의 어려움 등의 실무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독점규제법위반행위 가운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많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의해서

[81]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당해 위반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한, 당해 일반행위에 대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是正措置의 유무에 관계없이, 一般 不法

行爲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에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주22)

이는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독점규제법체제를 가지고 있는 日本에서의 鶴岡燈油損害賠償事件에서 仙台高等法院의 判決이 취한 입장이기도 하다.주23)

이와 같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관해서 民法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론 구성하는 것은, 현행 독점규제법상의 民事的 制裁 活性化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독점규제법의 견지에서 보아 脫法的인 節次를 許容하는 결과가 되고 同法이 前提로 하고 있는 法政策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현행 독점규제법은 私인에 의한 濫訴의 弊害를 방지하고 公正去來委員會 조치와의 一貫性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로 해서만 私인에 의한 民事적제재를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民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是正措置 前置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독점규제법하에서는 脫法的인 節次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是正措置 前置主義는 독점규제법에서의 實體法과 節次法의 조화와 균형을 꾀한다는 법정책적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독점규제법의 實體法 규정을 보면, 共同行爲와 企業結合의 규제에 있어서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강화 등의 산업정책적견지에서 公正去來委員會에 의해서 適用除外가 인정될 수 있는바,주24)

節次法上으로 시정조치 전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완전히 독립된 民事적제재가 허용된다는 것은 實體法과 절차법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려는 法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現行法上 共同行爲와 企業結合의 규제에 있어서 산업정책적견지에서의 公正去來委員會에 의한 適用除外가 인정되는 것은, 유럽공동체경쟁법에 있어서 생산, 분배의 증진 또는 기술·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정한 협정이나 관행에 대한 共同體 競爭法의 適用除外가 EEC Commission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에 비교될 수 있는데, 共同體 競爭法의 적용에 있어서 會員國 法院들이 共同體 競爭法上의 適用除外 여부에 대해서 EEC Commission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結論적으로, 民事的 制裁의 活性化를 위해서 현행법상의 시정조치 전치주의는 개선되어야 할 제도이지만, 단순한 해석론에 의해서 民法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저자의 소견으로는 단순한 해석론에 의해서는 民事적제재에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獨占規制法의 改正에 의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損害賠償請求 등의 民事적제재를 원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독점규제법 改正의 경우 선진 각국에서의 경험을 자료로 해서 濫訴의 弊害를 防止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措置들과 法院의 判決들이 一貫性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民事적제재에 介入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濫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民事的 制裁의 制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民事적제재에의 介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 주1)John H.Shenefield, " Open letter to the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9 Cardozo L.Rev. 1296(1988)
- 주2)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19조와 제29조
- 주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6조와 제57조
- 주4)15 U.S.C. Sec. 15(1970)
- 주5)15 U.S.C. Sec. 16
- 주6)이는 특히 정부가 독점규제자체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독점규제에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원판사들이 임명됨으로서 더욱 본격화되었다:John J.Flynn, " Which past is prolog? the future of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 35 Antitrust Bull. 879(1990) at 880
- 주7)연방법원에 제기되는 독점규제관련 소송가운데 私的 訴訟이 90%를 차지한다고 한다:John H.Shenefield, " Open letter to the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9 Cardozo L. 1299(1988)
- 주8)Barry Kellman, Private Antitrust Litigation(Chicago, CCH, 1985) at 110
- 주9)3배 배상에 의한 抑止的 效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도한 금전적 誘引力으로 인한 濫訴의 弊端을 제거하기 위해서, 敗訴한 被告에게 3배 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원고는 실손해액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받게 하고 나머지 差額은 政府에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A.Mitchell Polinsky, " Detrebling versus Decoupling Antitrust Damages: Lessons from the Theory of Enforcement, " 74 Georgetown L.J. (1986) at 1231
- 주10)Thomas E.Kauper and Edward A.Snyder, " An Inquiry into the Efficiency of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Follow on and Independently Initiated Cases Compared, " 74 Georgetown L.J. (1986) at 1164
- 주11)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명백한 경쟁제한행위의 경우에는 입증과 분석의 어려움이 적기 때문에 3배 배상의 금전적 유인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Reagan 행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서처럼 고가판매나 과소대금지급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3배 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견해차는 3배 배상제도의 경제 적기능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 주12)Steven C.Salop and Lawrence J.White, " Economic Analysis of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 74 Georgetown L.J.1001(1986) at 1021, 1033, 1037
- 주13)독점 및 합병위원회는 독점과 합병 그리고 기타의 경쟁제한행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서의 영업금지조항도 그 관할사항으로 하고 있다:Secs. 6, 64, 79, Fair Trading Act 1973; Sec. 5, Competition Act 1980
- 주14)Fair Trading Act 1973은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對消費者 去來慣行(즉 소비자에 대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거래관행:동법 제13조)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15)Sec. 35(2),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76
- 주16)William Allan and Gerard Hogan, Competition Laws of United Kingdom and Republic of Ireland(New York, Matthew Bender, 1989), Para. 5. 04(1)(b)
- 주17)Ibid., Para. 2. 01
- 주18)Sec. 35(1) GWB
- 주19)Julian O.von Kalinowski, World Law of Competition(New York, Matthew Bender,

1987), Vol B5, W.Ger.23-22

주20)David Klingsberg, "Balancing the benefits and detriments of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9 Cardozo L.Rev.1215(1988) at 1222

주21)鶴岡燈油 損害賠償請求事件에서 香川大法官의 소수의견, 公正取引 제473호(1990, 3) 제19면

주22)孫珠瓚, 新公正去來法(서울, 법경출판사, 1990) 제343면

주23)1985년 3월 26일 仙台高等法院 判決:公正取引 제473호(1990. 3) 제20면

주2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와 제19조